

미국의 언론 현황과 피해구제제도

최영훈 전북사무소장, 한병훈 조사2팀 대리



1.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과 수행을 맡은 최영훈 전북사무소장, 한병훈 조사2팀 대리(이하 '방문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언론사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 언론 현황을 조사하고 언론피해구제 및 고충처리 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단은 먼저 미국 뉴욕의 미디어법률자원센터를 방문해 미국의 언론 현황과 언론 관련 분쟁의 최근 추세를 조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뉴욕타임스 방문에서는 언론사의 자율적 독자 고충 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하고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 D.C.로 이동한 방문단은 미국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분쟁해결분과 대표단과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분야의 현안을 살펴보고, 언론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ADR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 방문기관 소개 및 면담 내용

가. 미디어법률자원센터

(Media Law Resource Center, MLRC)

MLRC는 1980년에 수정헌법 제1조 하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미국 언론사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 기관이다. MLRC는 300개가 넘는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는 주로 로펌, 언

론기관, 대학 등 학술단체 등이다. MLRC의 주된 역할은 언론 및 콘텐츠 법·정책 관련 자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입법 등 규제 관련 동향 분석 및 소송 실무 가이드를 마련하고 언론법에 관한 각종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다. 또한 MLRC에는 회원들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 등은 광고·상업적 표현, 고용법, 엔터테인먼트법, 윤리 등 분야로 세분된다.

다음은 Jeffrey P. Hermes 부센터장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Hermes 부센터장(이하 부센터장)은 수정헌법 제1조 및 미디어, 지적 재산, 인터넷에 관한 법률자문과 연구, 교육 등을 담당하며, 하버드대 버크만 센터(Berkman Center)에서 디지털 미디어법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이석형 위원장(이하 ‘위원장’): 미국의 언론 관련 소송 현황은 어떠한가?

부센터장: MLRC가 최근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중 70% 가량이 대중 매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매체 유형별 분포에 있어서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소송 비중이 확연히 증가했다.

위원장: MLRC는 언론관계법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판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는데 이러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부센터장: MLRC의 주요 기능은 언론사를 고객으로 둔 로펌이나 언론사에 소속한 사내 변호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연구하는 학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언론을 대표하는 법조인, 학자를 지원하는 것

이다. MLRC는 이들을 결속시키는 공동체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MLRC의 업적이나 성과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언론분야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위원장: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되는 손해배상액의 평균은 어떤 수준인가?

부센터장: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 건수 자체가 적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1심 평균 판결액은 약 77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1억 4천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한 단일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1심 평균 판결액은 약 240만 달러 정도이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언론사(피고) 측의 항소로 1심 판결이 전부 파기되거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심의 손해배상 평균 판결액은 약 70만 달러로 조사됐다.

위원장: 언론 분쟁과 관련해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부센터장: 일반적으로 ADR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다. 보통 재판부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이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이를 권하며, 다수의 사건들이 ADR 절차로 해결된다. 그러나 언론 분쟁을 전담하는 조정·중재 기구는 없으며, 언론 분쟁은 다른 분야에 비해 ADR을 통한 해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언론사가 ADR

을 통한 문제 해결을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법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재절차는 분쟁의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언론사의 양보나 절충 등을 강제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사는 법률적 논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원 재판을 더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위원장: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비례해 오보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는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

부센터장: 사적인 영상의 무단 공표 또는 영상 조작과 같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독립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실제 입법화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법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이나 크기에 알맞게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의 오보로 인한 피해 역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체의 전파성과 같은 특수한 요소를 참작해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가짜뉴스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부센터장: 선거와 관련한 법적 대응책으로 정치 관련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의 허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나 제도를 마련하기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가짜뉴스인지, 뉴스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가짜뉴스인지, 뉴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뉴스인지 등 그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대응책이나 장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사회적·경제적 압력 등 여러 다른 요소가 가짜뉴스의 유통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트위터와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계정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허위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 수천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게시된 영상을 검토하여 일부 허위 정보와 관련된 영상이나 계정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님에도 막대한 사회적 압력과 (광고주들에 의한) 경제적 압력이 크게 작용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상당폭 감소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ABC, CBS 같은 다수의 대형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폴리팩트(PolitiFact)와 같이 언론보도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전문 기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팩트체크 절차는 모두 자발적이기는 하나 상당히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장: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은 없는가?

부센터장: 수정헌법 제1조가 절대적인 규정이라고



〈사진 1〉 미디어법률자원센터(MLRC) 방문
(왼쪽부터) 최영훈 소장, Jeffrey P. Hermes 부센터장, 이석형 위원장, 한병훈 대리.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입법을 전부 금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 협박, 위협, 외설 등 일정한 유형의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 기관의 이러한 유형의 표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론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다른 형태의 압력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록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대중)의 언론 기관에 대한 감시를 유도함으로써 명확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

한 추가적인 보호장치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시행 중인 전략적 봉쇄 소송 규제법(Anti-SLAPP Law)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의 목적은 재판 절차의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덜어주어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오랜 소송 기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부담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보호 대상에 언론기관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텍사스 주에서는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 규제를 받지 않는 신문에 비해 방송은 방송 주파수 사용과 관련해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방송사는 방송 주파수 사용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NYT')

NYT는 1851년 창간한 미국의 유력 일간지로 1971년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부 비밀 문서인 '펜타곤 페이퍼' 보도를 통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수호하고 신장시킨 사건으로 유명하다. 2014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한 '혁신 보고서', 2017년에는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2020 보고서(Journalism That Stands Apart)' 등을 내놓으며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NYT에는 2018년 기준 약 1,550명의 기자가 소속되어 있고 이 중 200명이 넘는 기자가 세계 전역 31개 해외 지국에서 근무 중이다. 구독자는 4백만 명 이상 확보하고 있다.

면담에는 David McCraw 부사장 겸 법률고문 및 Michael Slackman 국제부문 편집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McCraw 부사장(이하 부사장)은 지난 16년 동안 NYT에 재직하며 50건이 넘는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담당했으며, 뉴욕대 로스쿨 및 하버드대 로스쿨에 출강하고 있다. Slackman 편집국장(이하 편집국장)은 카이로 지국장, 베를린 지국장 등을 거쳐 국제부문 주필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국제부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NYT는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를 2017년 독자센터로 변경해 독자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편집국장: 예전에는 신문사가 뉴스를 구성해 신문을 발행하는 데 그치는 일방적인 소통 구조였으나, 디지털 시대인 지금은 독자와 끊임없이 쌍방향으로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독자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설계되었고 단순히 불만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독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보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부사장: 정정이나 해명 요청과 관련해서는 독자센터 이외에도 전담 편집인(Standards Editor)을 별도로 지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독자센터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편집국장: NYT 구성원의 사명과 책무는 독자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독자센터는 보도국과 독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므로 독자의 신뢰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쉽지 않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부사장: 특히 요즘은 독자 등 모든 사람이 언론사의 기사나 보도를 매우 가깝게 주시하거나 지켜보고 있고, 진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자센터가 정직성이나 신뢰를 잃는다면 대중의 압력이 먼저 작용할 것이다.

위원장: 인터넷판의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가?

편집국장: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수정하고 본문 상단에 수정사항이 발생했음을 표시하며 본문 아래에 수정사항을 설명하는 주석을 덧붙인다.

부사장: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는 지면으로 보도된 기사를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수정을 하되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삭제하는 사례도 없다. 미국 법원 또한 기사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대신에 그 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활용한다.

덧붙여, 인터넷판의 발행 덕분에 많은 소송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사 수정의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인쇄된 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할 경우 수일이 지난 뒤에 정정보도를 실을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원 기사에 즉각적·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게재하고 있다. 즉, 원 기사를 접하는 독자는 수정사항을 함께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만 제기자도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어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빈도가 줄었다고 판단한다.

위원장: 한국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NYT가 소송 당사자가 된 사건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부사장: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소 사례는 20건이 있으며, 이 중 16건은 미국 내에서, 나머지 4건은 파키스탄과 러시아

에서 각 2건씩 제기되었다. 하루에 2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가 매우 강해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도 있다. 미국 내 16건의 소송은 NYT가 전부 승소했거나 아직 계류 중이며, 최소 지난 60년 동안은 미국 내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2건은 패소했으나 배상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기사의 잘못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고, 파키스탄 내 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위원장: NYT가 ADR을 통해 언론 분쟁을 해결한 바 있는가?

부사장: 불만 제기자와 정정 조치를 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정정보도 문구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 더불어 국외에서 조정을 통해 언론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방어 범리를 통해 NYT는 미국 내 명예훼손 분쟁에서 손해배상의 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반면, 불만 제기자는 일반적으로 금전 배상을 원하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노동, 계약 등 다른 분야의 분쟁에서는 ADR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원장: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편집국장: 언론의 자유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자유가 법적 보호를 받는 이유는 식견 있는 대중(Informed public)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언론의 자유 없이는 식견을 가진 대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 2〉 뉴욕타임스(NYT) 방문
 (왼쪽부터) 최영훈 소장, 이석형 위원장, David McCraw 부사장 겸 법률고문,
 Michael Slackman 국제부문 편집국장, 한병훈 대리, 강석원 주뉴욕총영사관 문화홍보관.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가짜뉴스의 유통이 용이해졌고,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언론 기관의 사명과 목표는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NYT의 브랜드 가치는 그 기사와 보도의 신뢰도에 바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언론 기관에게도 당연히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지만 가짜뉴스의 정의를 내리거나 가짜뉴스로 분류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해독하고 분별하는 능력(Media Literacy)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대학이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필요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사장: 참고로 가짜뉴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허위성만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위원장: 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의 가짜정보 여부 등에 대한 팩트체크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부사장: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에 국한한 팩트체크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의 스피치에 대한 팩트체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 팩트체크는 고위 공직자 스피치의 공적 신뢰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만큼 더욱 치밀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원장: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부사장: 방송과 관련해서는 전파가 한정된 공공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보도해야 하고 일정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다. 같은 법리를 신문에 적용

한 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종교나 인종 등에 대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정도로 알고 있다.

다.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는 1878년 뉴욕에서 설립된 자발적 전미 법조단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고 법조인 직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훈련, 법조인 교류 기회 마련, 각종 기준 제정, 로스쿨 인증 등을 수행한다. 회원은 변호사, 판사, 교수 및 기타 법조계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수는 2018년에 41만 명을 넘어섰다. 본부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으며, 워싱턴 D.C.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회 내에는 전문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연구를 위해 독점금지법, 노동법, 환경·에너지·자원, 조세 등 다양한 주제의 분과가 마련되어 있다. 이 중 분쟁해결분과는 1993년 설립되어 11,000명이 넘는 분과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ADR에 관한 연구, 교육, 토론 등을 주관한다. 분과 내에는 회원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19개의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각 담당 분야는 조정, 중재, 윤리, 국제, 지적 재산권 등이 있다.

방문단은 Harrie Samaras 분과위원장 및 Linda W. Seely 분과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Samaras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은 필라델피아 주 소재 Harrie Samaras ADR 사무소에서 국내·국제 상사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조정·중재자로 활동하며 분쟁해결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Seely 분과장

(이하 분과장)은 멤피스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테네시 주 Memphis Area Legal Services에서 프로보노 프로젝트 책임자로 재직했고, 2016년부터 ABA 분쟁해결분과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위원장: 분쟁해결분과의 목표와 역할은 무엇인가?

분과위원장: 조정자와 같은 중립자가 분쟁의 쟁점을 윤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거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 등 분쟁해결 직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주제의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기도 한다.

위원장: 최근 분쟁해결분과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분과장: 먼저 온라인 분쟁해결을 꼽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직접 출석해 처리해야 하는 기존 재판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립주법정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및 퓨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과 함께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이다.

분과위원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기도 하나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중재제도가 지나치게 조기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례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추후에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계약의 당사자가 중재로 해결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일어난 미투 운동과 관련, 근로 계약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비밀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받는 구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주의 깊게 살피는 주제 중 하나는 갈등예방이다. 분쟁에 이르기 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으로 분과 내에서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를 주제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 최근 가장 주목받는 ADR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분과장: 노동·고용 분야나 건설, 지적 재산권 등 상사 분야, 국제 분야의 조정·중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위원장: 미국은 소송 건수도 많지만, 조정·중재와 같이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언론 관련 분쟁은 어떤 절차를 통한 해결이 선호되는가?

분과장: 언론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이에 따라 손해의 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 법원은 재판 기일 지정 전에 ADR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연방 법원은 조정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분과위원장: 특히 언론 관련 분쟁은 수정헌법 제1

조에 관한 것이므로 그 특성상 극소수의 사건만이 법원 소송절차에서 끝까지 진행될 것이다. 판결을 통해 선례를 남길 필요가 큰 사안인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양측 간 합의안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지방법원의 민사사건 처리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의 2% 가량만이 재판을 통해 처리되고 사건의 98% 가량이 판결 전 조정 등을 통해 해결된다. 소송에서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건에 관한 기록이 공적으로 남게 되므로 법정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ADR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최근 미국 내에서 미디어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화제가 된 사례가 있는가?

분과장: 최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회 공청회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소셜미디어 회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호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규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나가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으로 미국은 언론 관련 분쟁에 관한 인식부터 이를 해결하는 양태, 관련 법규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3〉 미국변호사협회(ABA) 방문
(왼쪽부터) 한병훈 대리, 최영훈 소장, Harrie Samaras 분과위원장, 이석형 위원장, Linda W. Seely 분과장.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와는 달리 언론 분쟁에서는 ADR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조사한 바를 종합하면 이는 무엇보다도 ADR 차원에서 언론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확립된 조정·중재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법률적 방어 기반에 기대고자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이를 깊이 헤아릴 전문성 있는 조정·중재자를 찾기 어렵고, 분쟁 발생 이전에 이미 사전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고용, 상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사전에 법률관계 형성의 여지가 거의 없는 언론 분쟁의 당사자 간에는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개시의 합의, 조정·중재자 선정 등 여러 합의 단계를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제도는 누구나 비용 없이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언론 분쟁의 전문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가진 중재위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법률적 독립성을 가지고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방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의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어쨌든 이번 방문은 방문국의 언론과 언론법제 현황 조사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의 내실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언론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서의 모범과 표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